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가단1073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변지영

#별지

청 구 원 인

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합니다.)와 소외 C 사이의 2013. 12. 3.자
오토할부대출계약과 그 대출실행 및 소외 C의 미변제

가. 소외회사는 소외 C와의 사이에 2013. 12. 3. 대출금 30,400,000원, 대출이율 연 3.9%, 지연배상금율 연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기간 2014. 1. 15.부터 48개월간, 할부대출금 변제기 매달 15.등으로 정하여 오토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소외 C의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나. 소외 C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가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자산확정일 2017. 11. 30. 까지 소외회사에게 위 대출원금 중 7,392,42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출이율과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99,15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위 양도 전 일까지 소외 C은 소외회사에게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7,991,582(기타비용 200,659원 포함)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2017. 11. 20.자 자산(채권)양수와 채무자 소외 C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

가.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목적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입니다. 원고는 2017. 11. 20. 소외회사로부터 소외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해 12. 21. 소외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는 소외 C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18. 4. 26. 소외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30426호로 위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8. 24. '소외 C은 피고에게 8,545,622원 및 그 중 7,392,423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같은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소외 C에게 2018. 8. 31. 송달되고 같은 해 9. 14. 확정되었습니다.

다. 그렇다면 소외 C은 원고에게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위 양수금 채권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1. 1. 22. 기준 위 판결금채권 원금 8,545,622원이고 지연손해금 합계 금 5,584,140원이며, 판결금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금은 금 13,576,482원입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피고의 배우자이고 소외 C의 부친인 망 E는 2020. 1.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와 그 아들인 소외 F, 채무자 소외 C이 있는데, 상속인들인 피고와 소외 C, F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한 소외 C, F 자신들의 상속분 각 2/7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또 소외 C의 부친 망 E는 소외 G조합과 사이에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92,4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2020. 2. 24. 소외 G조합과의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가. 소외 C의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의 추정

소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자신이 유일하게 공동 소유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배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채무자 소외 C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 협의로써 그 공유지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 소외 C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 C은 당시 그러한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나. 소 결

그렇다면 채무자 소외 C과 수익자 피고 사이 2020. 1. 6. 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정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그리고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나. 이 사건 수익자인 피고가 2020. 2. 24. 소외 G조합과의 사이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 그러므로 수익자 피고가 원물반환을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부담은 변동이 없으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C의 상속분 2/7 범위에서 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인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영천시 H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I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3층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J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K호

철근콘크리트조 82.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영천시 H 대 218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182분의 22.877, 끝.

